

의안번호	2218466
의 퇴 인	박정하의원
회 답 일	2026.8.19.
추계번호	26B227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9억 600만원, 2032년 19억 6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95억 3,200만원(연평균 19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4조)	1,906	1,906	1,906	1,906	1,906	9,532	1,906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결과는 사업내용이 구체화 될 경우 본 추계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제2항) 4의2.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숙련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교육사업 2의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제2항)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통역지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숙련 교육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4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규정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	• 미대상 － 개정안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시행해야 할 사업의 내용에 ①산업안전교육 등 교육사업과 ②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임 － (산업안전교육)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¹⁾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입국한 후 일정 기간 이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업종별 기초 기능,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취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²⁾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 －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지차 예산을 활용하여 재직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산업안전 및 인권교육 등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이미 시행 중인 교육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①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주거환경 개선) 현재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밀집지역에 공공주거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⁴⁾을 시행 중이며,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은 20억 4,000만원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하여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⁵⁾을 신규로 추진하여 16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따라서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	• 추계(제1항~제3항, 제6항) － 유사사례를 이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 미대상(제4항, 제5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노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⁶)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평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의 규모를 검토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도 예산의 범위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 입국 후 취업교육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교육 시간]

과 목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시간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생활법률	5시간
고충상담절차 등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기관 안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모성보호 교육	3시간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5시간
2)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시간

자료: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3]

-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 ③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의 내역사업
- 5)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의 내역사업
- 6)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과 같음
 -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통역지원
 -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숙련 교육
 -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관련 지원 사업
 -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 규정된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통역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숙련 교육,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관련 지원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은 현행 재정 사업의 범위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어교육 및 통역 지원)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을 하도록 규정함에⁷⁾ 따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상담센터 사업⁸⁾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송출국 언어⁹⁾ 통역원을 통한 전화 및 내방 상담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2026년 예산 20억 3,000만원) 중임

※ (교육) 고용노동부는 현행법령에 따라¹⁰⁾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훈련(2026년 예산 10억 3,800만원), 한국어교육(2026년 예산 7억 800만원)¹¹⁾ 등을 시행 중임

※ (지역사회적응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대상 체류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2026년 예산에 22억원을 편성하였음

7)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8)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의 내역사업

9) 중국어, 베트남어, 파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싱할라어(스리랑카), 몽골어, 우즈베크어 등 16개 언어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11)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1134-307)의 내역사업

- 다만, 본 추계서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유사 사업의 추진 체계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며, 이때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지원단가는 2023년까지 추진하였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을 토대로 산정하고, 사업대상자 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을 토대로 산정함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말 종료
- 사업개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교육 등의 종합적인 체류지원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¹²⁾
- 지원내용
 - (거점) 인건비·사업운영비·사업비 지원
 - (소지역) 상담원 인건비 및 컴퓨터 운영비 일부 지원

[표 3] 2023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고용보험기금) 계획액

- #. 거점센터 운영비: 5,719백만원
-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4,030백만원
 - (운영비) 건물관리비, 공공요금 등 812백만원
 - (사업비) 한국어교육 등 사업비 876백만원
- #. 소지역센터 운영비: 1,388백만원
-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1,334백만원
 - (경상운영비) 54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¹³⁾

- 사업기간: 2024년 신규 사업
- 사업개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지역특화 교육 등 각종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 지원대상: 2025년까지 공모를 통해 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기존 선정 9개 지역 외에 공모를 통해 추가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

12) 고용노동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2024.3

13)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 사업의 내역사업

[표 4]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 현황

구분	운영 지역
거점형 (11개소+2개소)	인천, 대구, 광주,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충남, 부산, 전북 경북(구미), 전남(여수), 2개소 선정 예정
소지역형 (6개소)	전남(영암), 경기(광주), 경남(진주), 울산, 청주, 강릉

자료: 고용노동부

[표 5]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결산액	2023 결산액	2024 결산액	2025 결산액	2026 예산액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6,893	6,960	—	—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	—	1,708	1,762	2,900
합계	6,893	6,960	1,708	1,762	2,900

주: 1. 고용노동부는 체류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을 종료하고, 2024년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을 새롭게 추진

2. 결산액은 실집행액 기준임

3. 지방비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 (사업대상자 수)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사업대상자 수는 광역자치단체 중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지원 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 서울, 대전, 강원을 대상으로 함¹⁴⁾
 -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도 개정안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현재 집행 중인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감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규 사업비가 발생하여 재정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지원단가) 지원단가는 2023년 기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거점센터 대상 예산액을 개소 수(9개소)로 나누어 산출
 - － 본 추계서는 유사사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의 추진 형태(민간보조)를 토대로 지방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14) 세종과 제주를 제외

[표 6]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지원대상(A, 개)	3	3	3	3	3	—	—
지원단가(B, 백만원)	635	635	635	635	635	—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1,906	1,906	1,906	1,906	1,906	9,532	1,906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결과는 사업내용이 구체화 될 경우 본 추계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참고자료 1]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개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목적)** 지역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3년간)
- **(사업규모)** '26년 총 사업규모는 58억원 수준, 기존 선정 9개 지역 외 공모를 통해 추가 10개 지역 선정 예정

기존 선정지역 (9개소)	인천, 대구, 광주,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충남, 부산, 전북
------------------	--

* 총 선정 및 선정 예정 지역은 19개 지역(4억원 13개 지역, 1억원 6개 지역)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50:50 대응투자 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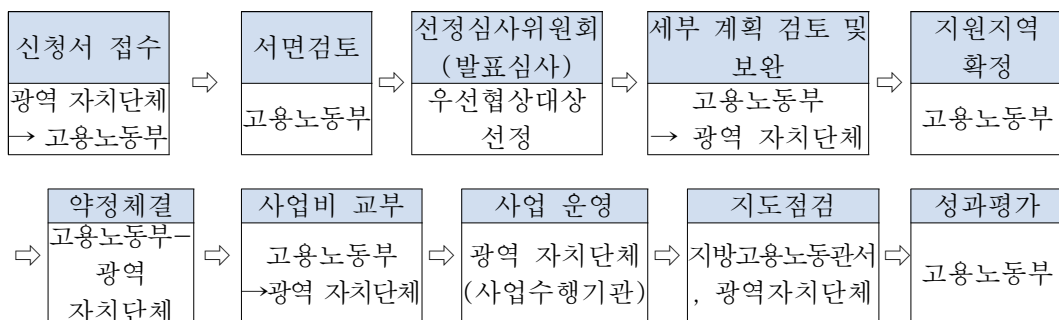
- **(기능)**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위한 상담, 지역특화 교육, 지역 산업·고용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운영 등

* 외국인근로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주말(일요일)에도 각종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 상담·교육 등 공통서비스 외 지역별로 다양한 특화서비스 제공

- * (부산) 지역주민을 외국인근로자 생활 멘토로 지정 → 지역정착 등 지원
- (전북) 지역 금융기관 통역자원 활용, 지역생활 길라잡이·웰컴키트 제공 등

< 사업 운영 체계 >



[참고자료 2]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개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1)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 ☐ **(사업목적)** 자치단체 주도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밀집지역에 공공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및 권익보호
- ☐ **(사업내용)** 공공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지원
- ☐ **(사업기간)** '25~'27년
- ☐ **(사업규모)** 총 18,000백만원 (2개소×9,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30%)	지방비(70%)	총액	비고
2025년	300	700	1,000	설계비
2026년	2,040	4,760	6,800	공사비(40%)
2027년	3,060	7,140	10,200	공사비(60%)
계	5,400	12,600	18,000	

* 부지매입비, 시설 운영비는 자치단체 부담

- ☐ **(사업시행주체)** 광역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 ☐ **(사업방식)** 자치단체자본보조
- ☐ **기대효과**
 - **(안전한 주거 확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영세사업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애로 해소
 -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자치단체 주도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주거 이외 상담,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 **(안정성 초기 정착)** 주거와 통합된 교육·상담·교류 등 종합적인 거점 공간 제공으로 사업장 이탈방지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 지원

(2)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 ☐ **(사업목적)**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기본적 생활권 보장
- ☐ **(사업내용)**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
- 노후화된 화장실 시설, 냉난방 설비 등을 「근로기준법」 제100조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개보수한 시설·설비 비용 지원
- ☐ **(사업기간)** '26년~
- ☐ **(사업규모)** 총 4,200백만원 (사업장 210개소)

(단위: 백만원)

유형	1개소당 지원한도	지원대상 수	'26년 예산 (지원비율)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액
임차	20	147개소	1,323 (45%)	1,323 (45%)	294 (10%)	2,940 (100%)
자가	20	63개소	315 (25%)	315 (25%)	630 (50%)	1,260 (100%)
계		210개소	1,638	1,638	924	4,200

- ☐ **(사업시행주체)** 광역지방자치단체
- * 보조금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예정
- ☐ **(사업방식)** 자치단체자본보조
- ☐ **(기대효과)** 외국인근로자(E-9)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고용환경 조성 및 기본적 노동인권 보장
- * 안전한 주거환경,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공급, 사회통합 및 지역 발전